

## 다산포럼

## 빛나는 문화, 정의로운 문화

김정남  
언론인

1993년 9월 15일, 나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회경원원소도감의궤(徽慶園園所都監儀軌)' 한 권을 반환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 그것은 프랑스 고속철 차량을 한국에 팔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그때 그 의궤를 한장 한장 들춰보았던 그 감격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프랑스가 약탈해간 207권에 달하는 외규장각 도서가 5년마다 간신히는 대여방식으로 한국에 귀환한 것은 훨씬 뒤인 2011년이었다. 실제로 145년 만의 일이다.

우여와 곡절은 있지만, 해외로 불법반출되었던 우리 문화재는 이렇게 속속 돌아오고 있다. 구한말 '호조태환권'(戶曹免換券) 인쇄원판이 지난 9월 3일, 62년 만에 환수되었다. 호조태환권은 1892년 고종이 화폐개

혁을 단행할 때 구화폐의 회수를 위해 발행한 일종의 교환표로 그 원판은 최초의 근대 지폐를 대한제국에서 인쇄했던 역사적 유물이다. 이것이 6·25전쟁 때 미군에 의해 미국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한·미 사법공조수사를 통해 돌아오게 된 것이다.

역시 6·25전쟁 당시 미군 병사가 종묘에서 훔쳐온 지금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에 있는 문정왕후(중종의 둘째 왕비이자 명종의 어머니) 어보도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식적으로 환수된 해외문화재는 131건, 9756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는 국보가 4점, 보물이 18점이나 된다. 아직도 해외에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는 약 15만3000점, 일본에만 6만7000점이 있다.

이러한 와중에 아주 공교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10월,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나가사키현(縣) 쓰시마시(市)의 가이진(海神) 신사 지붕을 뚫고 들어가 통일신라시대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입상을, 인근 관음사에서 관음보살좌상을 훔쳐낸 것이다.

관음보살좌상과 금동여래입상은 부산세관을 무사히 통과, 한국으로 흘러들어왔다. 경찰의 추적으로 범인의 다수는 붙잡혔고, 두 개의 불상은 압수되어 현재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이 가운데 특히 금동여래입상은 둑은 상투, 미소 띤 아름다운 얼굴, 단아한 체구,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 등이 뛰어난 걸작으로 국보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복장에서 나온 조선기가 있어 조선연대(고려 충숙왕 17년, 1380년), 조성사찰(충남 부석사), 조성목적(부석사 관음전 주준불) 등이 밝혀져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당연히 이 불상은 금동여래입상과 함께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었다.

부석사 측이 "14세기에 한국에서 조성돼 부석사에 봉안돼 있던 것을 당시 창궐하던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일본의 관음사 측은 "조선시대 불교타입 과정에서 일본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즉각 반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자 자신들의 주장은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불상이 '장물'로 국내에서 발견되었을 당시 정부는 문화재 보호법과 불법반출을 불허하고 있는 유네스코 협약을 들어 그러한 문화재는 즉시 원래의 국가로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부석사 측은 정부를 상대로 '불상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소장

했던 일본 측이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27일, 광주에서 있었던 한·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유진룡 장관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도난·약탈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규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문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러한 언급을 놓고 일본에서는 '돌려주기로 했다'고 칭찬부터 마시고 있고, 국내에서는 질타와 비난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유진룡 장관의 견해는 만 번 옳다. 먼저 돌려주고 나서, 만약 일본 측이 이 불상을 불법적으로 강탈해간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당당하게 돌려받아도 늦지 않다. 다른 사람의 눈에 우리 스스로가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히 정의를 말할 수 없다. 돌려받을 문화재가 아직도 많아 나이 있는데, 우리가 정의롭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을 회수해 올 것인가.

백범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높고 빛나는 문화는 정의로 밀발침되는 것이어야 한다. 남에게 빼앗긴 아픔을 겪었으니 우리민은 남의 것을 빼앗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양동옥의 S 스토리

## 부부 침실에 개입한 법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진 섬기를 찾았던 덕분에 남편은 통합 수술로 남성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내는 종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평소 남편의 일방적인 성관계로 우울증을 앓았고, 병행 당시 강압적 성관계로 일시적인 정신 작란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수용되어 무죄판결로 물려났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압적으로 성관계한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하거나 분노의 칼로 응징한 이야기가 언론 매체에 소개되자, 남성 중심적 성문화에 쟁여 있던 사람들은 혀를 끌끌 치며 '부부 사이에 무슨 강간?'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 심리학자들은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 147가지를 선택해서 남녀에게 어떤 항목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인지를 점수로 평가하게 했다. 여성들은 강압적인 성관계, 즉 성폭력을 7점 만점에서 6.5점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행동으로 답했지만, 남성들은 3점 정도의 약한 고통으로 평가했다. 게다가 일부 남성은 설문지 여백에 만약 상대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다면 대단히 성적으로 흥분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성폭력이 실제로 여성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가하는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가 남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중대한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우리 사회 역시, 남편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을 때 아내가 경험하는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다. '이혼 위기 부부가 새 출발을 약속한 뒤 부인이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 남편이 폭력을 사용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다'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1970년 대법원이 이처럼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이후,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부부간 성관계는 의무이니 어떤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되더라도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것이었다.

최근까지 형법에 명시된 강간죄는 이러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婦女)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부녀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부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우리 사회에서 혼인한 배우자, 즉 처(妻)은 부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었다. 그래서 부부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었다.

또한 '남녀의 생리, 육체적 차이로 남자가 강간하는 것으로 볼 때 강간죄 자체를 부여에게 한정한 것이며 남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의 1967년 대법원 판례처럼, 남성은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강간을 당하는 경우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또 지난 5월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사례가 있었다.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아내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대법원에서는 흥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신상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12월 형법에 명시된 강간죄는 이렇게 개정되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그 법령은 시행되고 있다. 강간죄 자체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부부 침실에는 끼어들지 않는다는 법의 통념을 깨고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 있다. 성관계 의무를 전제로 한 부부 사이에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강제로 성관계할 권리는 없다. 가장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해야 할 부부관계, 진정한 사랑에는 폭력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 전남도 전통주 산업의 부활, 이제 시작이다

농산물로 빚은 술이 최고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또한 예부터 집집마다 술 익는 마을이 있었던 술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남도 명주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이번 성과는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 명맥을 이어온 117개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국내 전통주 산업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전통주의 명성을 지키고 회복하고자 하는 술도가들의 정인정신과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가능했다.

관계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전통주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고객들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이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지역 전통주 산업은 경제적으로는 고용창출, 소득증대, 연관산업 동반상승 등 직접적인 효과와 아울러 문화교류, 관광객 유치, 지역문화 계승·발전, 지역민의 지역 애착도 및 애향심 제고 효과 등 간접적 효과를 통하여 지역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 술은 1909년 주세령이 공포돼 술 종류를 단순화하고 자가양조를 금지함으로써 그 무렵 약 12만 2000개나 되던 조선주 제조장과 36만 6700여명의 자가제조

면허가 폐지됐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2008년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과세 완화를 시작으로 전통주 복원,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다. 그리고 면허 요건인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전통주에 대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RM) 제조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하여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밤새고 땀흘렸다.

금년 8월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시설기준 강화'로 난관에 부딪힌 전통주 업체의 이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식품 안전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막걸리·전통주 제조업체는 대부분

이 영세하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가 대부분으로 농가에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생산·판매는 별도의 기준으로 대폭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전통주는 규제가 아닌 진흥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매년 '남도 술 품평회'를 개최해 지역에 숨겨진 명주를 발굴하고 대표 브랜드로 선발·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술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현대화하고 술품질인증 취득, 이달의 남도 전통술 선정 및 흥보 등을 통해 남도 술의 명맥을 잊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통술 산업 활성화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질이 추진하여 가까운 미래에 우리 전남의 전통술이 세계속에 우뚝 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社說

## F1 제속도 내려면 운영적자 해소부터

6일 영암에서 막을 내린 F1대회는 3일간 16만 명에 이르는 관중과 원활한 교통 및 숙박 등 운영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4회째를 맞아 대회 운영은 한층 안정됐고, 교통·숙박 등 인프라도 크게 확충돼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더구나 이번 F1은 적자 규모를 200억 원 이내로 줄여 향후 3년은 예산 204억 원도 전액 삼각됐다. 연이 경기 침체로 타이틀 스폰서나 이렇다 할 메인 스폰서가 나타나지 않는 등 대기업 참여가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티켓 판매, 마케팅 등 자조한 협력이다.

게다가 영암F1이 내년 4월 말로 사설 상 확정되면서 6개월 만에 대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부담에 대회 운영, 마케팅 등에 어려움이 커 비상이 걸렸다.

F1이 제자리를 잡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최권료를 40% 이상 낮추는 등 적자폭은 170억 원 규모로 대폭 줄여들 전망이다. 이는 첫 대회인 2010년 725억 원, 2011년 610억 원, 2012년 386억 원의 적자에 비해 운영수지가 크게 호전된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빛잔치'라는 데 있다. 이번 대회 비용 중 당초 240억 원을 목표로 했던 정부 지원

## 경찰 비리 만연, 과연 민중의 지팡이인가

경찰관의 비리와 불·탈법은 어제오늘이 일이 아니다. 대다수 경찰은 치안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가 상식을 뛰어넘는 일탈을 저질러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경찰관 비위행위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비위 행적의 행태는 상식선을 넘는다. 사건 당사자나 가족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고, 횡령까지 하는 등 비위가 횡행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관을 임용하면서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 함께 윤리교육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경찰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사자와 잘못된 몸가짐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지만 상급자나 관리·감독기관의 부실한 대처도 이들의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부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직분을 벗어나 범죄와 비리를 일으키는 해당 경찰관은 일벌백계해 경종을 울립으로써 재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신교육도 강화해 경찰관들이 법과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도록 해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無等鼓

"순전히 인간의 힘만으로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영국 기업가 헨리 크레머는 1959년 거액의 상금을 기부해 자신의 이름을 딴 '크레머 상'을 제정한다. 인력(人力)으로 0.5마일(800m) 떨어진 두 지점을 8자 모양으로 돌아 비행하고, 도버해협을 횡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2년 후인 1961년 11월,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원생 3명이 '심페호'를 만들어 1.8m 높이로 64m를 날며 최초로 인력비행에 성공했다. 날개 길이 24.4m, 기체 무게만 58.1kg으로 자전거 폴대를 밟아서 프로펠러를 돌려 추진력을 얻어 날아가는 '인간동력 비행기(Human Powered Aircraft)'의 시작을 열었다.

마침내 1977년 8월, 미국 폴 B. 맥크레이 박사팀이 만든 '고사마 콘도로 2호'가 2172m를 비행하며 조건을 충족시켜 첫 번째 '크레머 상'을 수상했다. 그는 1979년 6월에는 '고사마 알바트로스호'로 35.8km의 도보해협을 2시간 49분만에 횡단하며 두 번째 '크레머 상'을 거머쥐었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 인쇄인 金汝松 논설